◈ 政府 施策 ◈

第3次 經濟行政規制 緩和計劃(案)

『商工資源部 (52件)』

○ 공장설립 및 공단관리 5건, 품질관리 12건, 수출입 15건, 에너지 10건, 유통업 6건, 정책자금관리 4건

〈工場設立 및 工團管理分野〉

- 工場登錄 要件인 建築面積 하한선(100m²)을 폐지하여 登錄基準이하 業體도 工場登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融資, 納品, 入札 등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 해소('93. 8)
- 轉賣防止를 위해 최초 工場用地 所有權 移轉시 하도록 되어있는 還買特約登記를 관리기관 자율판단으로 생략가능토록 조치('93. 12)
-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基準工場面積率을 초과하는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장설립 신고후 4년이내 完工義務期限을 연장하여 불이익처분 대상에서 제외('93. 8)

〈品質管理分野〉

- 外資獲得用 原料의 對應輸出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自律管理業體의 選定을 現行 년 2회에서 수시 신청에 의해 選定토록 改善('93. 7)
- 電氣用品 지정시험기관의 試驗員 資格要件 완화('93. 12)
  - ○ 학력제한을 4년제 大學卒業에서 工高卒業 이상으로 완화
  - ○ 실무경력의 比重을 높여 해당분야의 有經驗者 活用 확대
- 현재 分期別로 報告토록 되어있는 電氣用品 生産·輸入實績報告 폐지('93. 7)
- 不良工産品에 대한 消費者不滿 分析結果의 통보(공진청)에 대한 해당 製造業體의 品質改善對策 보고제 廢止('93. 7)
-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의 경우 使用頻度가 낮고 高價인 試驗·檢査設備는 自己所有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 허용('93. 8)

〈輸出入分野〉

－外貨獲得用 原料 소요량 自體管理企業 및 소요량계산서 發給企業 選定要件을 대폭 완화('93. 7)

○自體管理企業 :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비교표에 등재된 업체로서 전년도 수출통관액 1천만불이상 업체(21개) → 1백만불이상 업체

○發給企業 : KS업체, 일류화업체등(244개) → 모든 수출품 생산업체

－輸出된 輸送機器의 A/S용 수입원료의 수출의무이행기간을 現行 4년에서 10년으로 延長 ('93. 7)

－무역업 등록업무를 市·道에서 韓國貿易協會(본부 및 지부)로 이관 ('93. 7)

－현재 무역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貿易業 效力確認制를 2년주기의 貿易業 登錄更新制로 전환 ('93. 7)

○輸出入實績은 貿易協會가 자체확인 (등록갱신절차 간소화)

－自己需要의 學術調査研究用으로 搬入되는 技術관련 外國刊行物·圖書 등에 대한 輸入推薦 免除範圍를 2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擴大 ('94. 1)

－本社와 海外支社間 통신시 略號資材를 使用해야 하는 業體(19개 업체 246개 지사)의 指定基準을 완화하고 交替週期를 延長('93. 9)

○指定基準 : 海外支社數 5(10개)이상이고, 연간 수출입실적 5(3)천만불이상 → 海外支社數 10개 이상이고, 연간수출입실적 5천만불이상

○交替週期 : 매4월마다 → 매년마다

－外國換銀行간에 共同으로 使用할 수 있는 「輸出入 承認業務 處理 指針」을 마련하여 은행간 업무처리의 一貫性 유지('94. 1)

〈流通業分野〉

－연쇄화사업자의 판매사 雇傭業務(본부직영 5명, 가맹점 3명)를 廢止('93. 8)

－연쇄화사업자 指定要件인 本部로부터의 商品供給比率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연쇄화사업의 活性化 지원('93. 8)

－연쇄화사업자의 商號·所在地등 연쇄화사업의 단순변경사항은 事前申告에서 事後申告로 전환('93. 8)

-석유대리점 허가시 販賣區域制限을 철폐하여 하나의 市·道에서 許可를 받으면 他 市·道 地域에서도 販賣가 가능토록 개선('93. 9)

-農·水·畜協 및 公務員年金賣場등 特殊賣場에 대한 附加價値稅 면제혜택을 단계적으로 廢止('93 하반기)

〈에너지 資源分野〉

-보일러 및 壓力容器에 대한 安全檢査를 업체가 희망하는 期間에 他法令에 의한 檢査와 동시에 實施할 수 있도록 措置('93. 11)

-石油製品輸出入 契約에 대한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件別 承認에서 반기별·유종별 包括承認制로 변경('94. 1)

-都市가스事業者等의 가스供給施設 시공시 低壓配管과 일정규모 이하의 中壓配管工事는 현행 承認制에서 申告制로 전환('94. 6)

-高壓가스施設의 部分竣工을 인정하여 全體施設이 完工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계적인 稼動 허용('93. 12)

-가스用品 製造施設의 安全管理員 採用資格基準(現行 기능사2급)을 安全管理員 養成敎育 이수자까지 완화('93. 8)

-家庭用 보일러 시공확인시 消費者가 부담하는 手數料 徵收制를 폐지하고, 확인기관의 瑕疵共同責任을 명문화하는 등 制度改善 추진('93. 11)

〈政策資金管理分野〉

-工業發展基金의 企業別 同時遂行課題數(현행 최대2개) 제한을 철폐하여 能力있는 企業의 參與幅 확대 및 硏究開發의 生産性 제고('94. 2)

-工業發展基金의 融資取扱銀行을 모든 銀行으로 확대(현행 3개)하여 實需要者가 主去來銀行에서 쉽게 貸出받을 수 있도록 지원('94. 2)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의 支援對象課題 發掘에서 支援決定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내로 단축(현행 12개월)하고, 中間報告書의 작성내용을 간소화('93. 12)

"'93년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자금"지원대상 과제확정

-3개분야 61개과제에 300억원 추가지원-

상공자원부는 중전기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대용량 이동용 변압기등』 61개 과제를 개발하기로 확정,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3-57호, '93. 7. 24)하였다.

상공자원부가 이번에 중전기기 분야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력과 심야전력의 격차가 극심하여 고효율 기기개발, 전력저장 및 심야전기 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중전기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중전기기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93년중 61개 기술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 지원하기로 하고

▲ 지난 5월부터 韓國電機工業振興會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소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개발과제를 검토·확정하였으며,

▲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8월 25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한전기술 연구원에서 접수한 후, 한전의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중 기술개발에 착수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전기기의 대수요처인 전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전기기 제조업기술개발 사업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의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91년에 처음 100개 과제를 선정지원한 이후, '95년말까지 총 110개 과제에 대해 560억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이번에 61개 과제에 대해 3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전기기 분야의 기술혁신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한 기술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중전기기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수출산업화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95년이후 년간 1억 8천만$의 수출증대와 3억 6천만$의 수입대체가 기대된다.

『'93년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과제

• 765KV급 SHUNT REACTOR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대용량 이동용 변압기 개발 • 362KV 63KA GIS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인버터 직류 펄스티그 용접기 개발 • 피뢰기 미부착형 서어지 감쇄 변압기 개발 • 345KV OF CABLE 접속함 개발 • 가스절연변전소용 특수금속합금(AL 합금 포함) 탱크 개발 • 수냉식 대전류 정류기 개발 • 초고성능 MAG WELDING SYSTEM 개발 • AL FLASH BUTT WELDER 개발 • DSP와 공진회로를 이용한 UPS 개발 • 765KV 송전용 PREFAB·JUMPER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실시간 근거리 낙뢰 경보장치 개발 • 로타리 아크 소호방식을 이용한 SF6 가스 전자접촉기의 국산화 개발연구 • 산업용 교류 고압 대용량전동기 부분방전 측정기 개발 • 휴즈부 저압 개폐기 개발 (옥외용) • 7.2KV급 유도전동기 속도제어 시스템 개발 • 전원 및 신호/통신회로 뇌서어지 차단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지중매설물 탐지장치 개발 • 염분오손도 측정장치 개발 • 지중 배선용 엘보우 피뢰기 개발 • 배전선로용 리크로우저 MICOM 제어장치 제작 기술개발 • 765KV 송전용 전선 SPACER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고신뢰성 자기제 배전용 현수애자 개발 • 정류특성의 내구성 개선을 위한 흑연질 브러쉬 제조공정 • 배전용 동심 S-Z 중성선 전력케이블 • 다심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 개발 • 소형 LITHIUM ION 2차전지 정극 및 부극 활물질 도포 기술개발 • 345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력케이블의 개발 • 산업용 고압전력 케이블 현장 진단장치 개발 • 방직기용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개발 • 수지몰드 디스크형 고전압 콘덴서 개발 • 지중배선선로용 이온투과방지용 반도전 컴파운드 개발 • 순서접속 제어방식 고효율 단상 유도전동기 구동 시스템 개발 • 1000V·50A급 IGBT 개발 • 1000V·50A급 MOSFET 개발 • BLDC MOTOR 부착형 50W급 MAGNET PUMP의 개발 • 발전소용 압력센서 개발 • 전기로용 고온 발열체의 개발 • 노트북 PC FDD용 스테핑 모터 개발 • 캠코더 오토포커스줌용 스테핑모터의 제조기술 개발 • 배전용 실리콘 COMPOSITE INSULATOR 개발 • 인텔리전트 파워모듈 개발(600V 50A) • 비정질 코아를 사용한 수은 및 나트륨등용 안정기 개발 • EHD를 이용한 냉장고 열교환기 효율 개선 및 착상제어 • UPS용 비정질 고주파 CHOKES 개발 • 원자력발전소의 전자제어 카드 및 제어설비 국산화 개발 • 전자 BEAM 순시치 제어형 전원장치 • 전력관리제어 시스템 개발 (선박용) • 디지탈 밧데리 충전기 • ROTOR FUSHING 가공공정 자동화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PM 스태핑 모터의 STATOR 생산 공정의 자동화 • 방사선 MONITORING용 SURVEY METER 및 개인 선량계 개발 • KCATV망 감시용 감시모듈 개발 • 한국형 CATV 컨버터 DATA 송·수신용 고주파 모뎀개발 • 한국형 대형컴퓨터 설계 기반기술 개발 • 노이즈 차폐 트랜스로 구성한 고주파 용접기 개발(에너지 절감형) • 3상 교류전동기 구동용 사이크로 컨버터 개발 •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 발전전략 • 지중 배선용(22.9KV) 케이블의 수트리 억제형 XLPE 콤파운드 개발 • 액체 방사성 폐기물여과 및 복수여과용 필터 카트리지 개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전기술연구원 개발협력부 (T. 042-865-5220)로 문의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공고

-電機振興會, 전기·전선·전지업체 확인-

상공자원부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애로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확인요령을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50호('93. 7. 20)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93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1. 지원내용

   가. 임금체불 및 부도우려에 대비한 긴급운영자금지원

   나.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을 감안하여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2. 지원대상업체

   가. 자체 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나.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3. 지원절차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의 "노사분규로 인항 애로기

업 확인기관" (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노사분규피해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 1부(별지 각호서식)

나. 거래기업 또는 자기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5. 확인 및 확인서 교부

확인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여부를 결정하되 제2항의 지원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에 확인서 1부를 교부한다.

가. 당해기업 또는 거래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여부 및 분규상황

나. 중소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6. 확인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 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보고

확인기관은 매월말 확인결과 및 수혜사항을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산업진흥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확인기관은 전 각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일부터 상공부 공고 제92-17호는 폐지한다.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

확 인 기 관 명	확 인 대 상 업 체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	○ 상공자원부 소관 전제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 상공자원부 직할공단 및 마산, 이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	○ 공단(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
○ 한국철강협회	○ 철강, 비철금속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요업, 석유 및 정밀화학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기계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전선, 전지포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섬유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자동차 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 전자 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조선 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백화점협회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규모 소매점

에너지 節約 기술개발 30억원지원
-상공부, 40개 課題 선정-

상공자원부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위해 에너지 절약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건물·수송·전기분야에서 40개 연구과제를 선정, 올해 총 3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선정된 연구과제는 지난해 에너지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대학등 5천여개 업체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선정된 100개 중요 기술개발과제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지원대상과제는 산업공정분야가 보일러 자동장치 국산화기술개발(사업주관 : 두익산업), BTX 공장 증류탑의 최적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대림엔지니어링), 정유공정제어모델 개발(삼성엔지니어링), 증기재압축시스템에 의한 폐열회수(정림기술), Pinch Technology를 이용한 화학공정의 에너지절감기술(호남정유), 이산화탄소 흡착공정개발연구(에기연)등 7개 과제이다.

또 산업일반분야는 에너지절약형 산업유기물 농축시스템(선경건설연구소)등 7개과제, 요로금속분야가 진공이온 침탄기술개발(제인테크닉)등 6개 과제, 전기분야가 고성능 고주파유도가열장치 개발(한국기계연구소)등 7개 과제, 건물분야가 가스엔진구동 히트펌프(광양종합기계)등 7개 과제, 수송분야가 ECU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서아)등 6개 과제이다.

한편 상공부는 이번에 선정한 민간주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절약효과가 크고 기술개발이 시급하지만 민간기업만으로는 기술개발이 곤란한 10개분야의 대형복합기술은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산·학·연을 연계한 최종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 확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新經濟 5개년계획 對日逆調개선세부대책" 마련
-對日 수출전념 中企 중점지원-

상공자원부는 對日무역역조개선을 위해 對日수출에 전념하는 중소 중견수출업체 500개를 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 품질 및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對日마케팅활동시 해외시장개척

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으로부터 매년 10명내외의 상품전문가 초청을 통해 대일 수출 유망상품을 집중 발굴하고 각 시·도별로 특산품 1개 품목을 대일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대일무역역조개선 세부대책'을 통해 향후 대일 역조대책을 그동안의 수입감축 노력 대신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전환하고 수출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일 마켓팅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국내업체의 일본현지유통법인등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시장내 유통 거점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일본내 수입촉진유통센터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일시장 유통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일수출 전문업체협의회 구성을 통해 대일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종합상사의 현지 판매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할부판매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대일무역역조개선대책으로 대일수입절감 및 수입관리제도 개선과 함께 대일산업기술협력강화, 경제협력사업 다각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일무역적자 주도 부문인 기계 및 전자부문 수입 절감을 위해 향후 5년동안 3500개 기계류 국산 개발에 5880억원을, 18개 부문 56개 핵심전자기술 개발에 3712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중 1353억원을 투입, 대일의존 핵심기술과제를 매년 20개 품목씩 선정, 관련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대일산업기술협력강화 대책으로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 일본의 對韓 투자 증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투자유치단 파견을 통한 일본첨단산업 對韓 투자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일기술도입과 관련, 첨단고도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나가는등 대일기술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대일경제협력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반도체·자동차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수 파견, 고도기술분야의 퇴역 일본인 기술자 활용,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 등 제3국 대형프로젝트에 한·일간 공동진출 방안등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이러한 대일 역조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대일 수출은 연평균

10.5%씩 증가, 현재보다 2배정도 증가한 211억달러에 달한 반면 대일 수입은 연평균 8% 증가로 309억달러에 이르러 98년엔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달러가 넘지않는 98억달러선에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78억달러보다 20억달러 정도 더 증가한 것이지만 수출입의 역조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적자액의 GNP에 대한 비율도 현재의 2.7%에서 1.5%선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상공부는 기대하고 있다.

北方輸出·投資·入札신고제 폐지

-商工部 支社설치등 신고대상국가도 4개국으로-

商工部는 지난 6월부터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총리훈령)개정에 맞춰 지사설치·전시회 참가·공동사업추진시 申告 대상국가를 종전 17개국에서 중국·라오스·캄보디아·쿠바등 4개국으로 줄였다.

또 그동안 실시해온 북방국가에 대한 수출·투자 및 입찰참여시 신고세를 폐지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종전의 '북방국가와의 통상교류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는 대신 '북방국가에 대한 지사설치등 업무지침'을 새로이 마련,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2백만달러 이상의 산업설비수출 ▲국제입찰참가 ▲5백만달러이상의 상품신고 ▲2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이하등을 북방국과 추진할 경우 의무화됐던 신고제가 완전 폐지됐다.

그러나 중국·라오스·캄보디아·쿠바등 4개국에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들 나라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상공부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상공부승인(무역진흥공사 경유)을 받아야하며 통상을 목적으로 현지정부·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사업 및 협력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사전신고를 받도록 했다.

知的財産權 심볼마크 및 표어제작 弘報

-商工部, 전국민적 인식제고 위해-

상공자원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7월 22일 11개 기업과 전기진흥회, 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13개 관련단체 홍보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홍보대책회의를 열고 각 업체가 신문이나 TV에 상품광고나 기업광고를 할 때 당국이 제작한 홍보용 마스코트와 표어를 같이 실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반에 알리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제작한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용 마스코트는 탄생과 보호를 의미하는 계란형 마스코트로 「아이피」로 명명했으며 이달중 무역협회를 통해 마스코트와 표어 5천장을 업계에 배포키로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홍보활동과 병행해 대여권 인정,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대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국가로 미국으로부터 우선 관찰대상국(PWL)으로 되어있어 대미통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범국민적 홍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회원업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대업계 요망사항〉

- ㅇ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
- ㅇ정부에서 선정한 홍보용 심볼마크 및 로고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상품 및 유인물등에 홍보용 심볼마크 및 로고 게재
  - -IPR(지적재산권) 공익광고에 대한 협찬
  - -기업광고시 심볼마크 및 표어 삽입
  - -지적재산권 홍보 포스터, 심볼마크 및 로그 게시판 등에 게첨
- ㅇ중전기기 제품의 위조, 모조품 제조 근절

産業技術 育成 총력
-政府,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기술전쟁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산업정책의 수단과 조직을 '기술드라이브'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을 마련,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개발 지원자금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등 정부지원자금을 '93년의 2700억원에서 '97년까지 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하 6개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도 '93년 2441억원에서 '97년까지 3500억원이상으로 확대, '97년에는 산업기술개발에 모두 1조원이상을 지원하며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조1450억원인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의 기술개발자금도 확대하고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 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추진방향'을 통해 올해를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무역·통상·중소기업·입지등 과거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과감히 산업기술정책과 접목시켜 '기술드라이브' 성장 지원체제로 재구성, 산업기술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또 산업기술진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진흥회의'를 상공부장관주재로 분기별로 개최해(제1회 9월개최)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 산업기술개발 애로사항의 발굴 및 대책강구등을 통해 산업기술진흥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명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의 '기술정책자문단'의 운영과 함께 사무관급 기술정책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 실제적인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공부 전조직을 산업기술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우선 상공부공업국의 기술정책 기능강화와 함께 공진청·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등 상공부 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종합검토,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위주의 기술개발지원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현재의 기술개발사업을 기술개발단계별(연구개발·시작품제작·사업화·양산화)과 기술유형별(공통애로기술·증기거점기술·첨단대형기술·시스템 및 표준화기술)로 세분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자금과 지원조건등을 차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각 사업별 세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고 특히 산업계의 핵심기술개발을 일괄지원, 추진하는 증기거점기술 개발과 美國·日本·러시아·濠洲 등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중점 지원하는 체제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술계통도의 작성과 체계적인 기술정책 수립 및 개발지원과제 도출등에 활용하는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사업을 보다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술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사업화자금지원과 생산전문화 추진, 수요창출 지원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기업간,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우대, 중점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체제로 정비하고 생산기술연구원등 산업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을 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며 민간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등 민간연구개발 조직을 활성화, 민간주도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지원강화에도 주력, 지방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확대하고 지방공업기술원의 기술지원기능을 강화, '지역기술센터'로 전환토록 유도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키 위해 창업에서 양산화까지 유기적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先進國의 42.6% 수준
-상공부 내달 257개課題선정 개발계획접수-

국내업계가 시급히 개발을 필요로 하는 핵심요소기술의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9개분야를 대상으로 93년도 공업기술수요 1차조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신청된 과제의 국내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평균 12.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전자정보공업분야의 경우 45.5%, 섬유생활공업분야는 44%로 평균기술수준을 다소 상회했으나 공업기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공업분야와 기계공업분야는 37.8%와 41.2%로 평균기술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별로는 의료기기(도출과제수 6개)가 56.7%로 가장 높았고 방직 및 직물(4개)은 55%, 산업디자인·포장(9개) 53%, 정밀화학(17개) 49.6%, 광응용기기(5개) 48.8%, 섬유제품 및 염색가공(15개) 48.8%, 계측제어(14개) 46.7%, 컴퓨터(14개) 46.4%, 산업기계(10개) 46%, 전자부품 및 재료(19개) 45.6%, 공작기계 및 로보트(10개) 44.9%, 중전기기(9개) 44.5%,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14개) 42.6% 등으로 국내평균수준을 상회했다.

그러나 통신기기(9개)는 42.3%, 생활용품(6개) 41.7%, 석유화학 및 고분자재료(8개) 41.6%, 자동차(4개) 40.5%, 비철금속(6개) 40.4%, 섬유원료(5개) 40%, 가전제품(0) 39.5%, 환경기술(11개) 39%, 조선(4개) 38.9%, 냉동공조 및 고압기기(9개) 38.8%, 요업(10개) 37.6%, 화학제품(7개) 37.3%, 항공기(3개) 36%, 생산기반기술(16개) 35.9%, 자동화(11개) 35.8%, 철강재료(3개) 21.6%로 국내평균기술수준에도 못미치는등 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502개 과제중 시급성과 기반성등을 감안, 최종적으로 도출한 257개 과제에 대해 오는 8월중 공고를 통해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 150개 과제에 대해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기술개발자금등 정책자금을 지원,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업기술수요조사로부터 자금지원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조사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키로 하고 하반기에는 기반기술과 공통애로기술, 시급히 개발해야할 기

술을 폭넓게 조사, 30개 분야(에너지분야신설)에서 약 500여개 과제를 도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신청된 과제는 제품과제가 전체의 53%로 가장 높고 기술과제가 19%, 시스템과제가 28%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의료기기·통신기기, 컴퓨터, 조선·자동차·냉동공조·중전기기분야가 제품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機械類·산업설비 輸入決濟 性能확인 延長

-財務部 10월 外換관리규정개정 시행-

수입품의 性能確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輸入決濟조건이 완화된다.

또 해외에 투자진출한 기업이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機械類 및 産業設備의 성능확인후 대금지급결제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해 주기로 하고 오는 10월 외환관리규정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성능확인후 대금결제는 기계류 및 산업설비를 一覽拂조건 信用將거래로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가능하며 성능확인후 결재비율은 20%까지, 결제기간은 180일로 제한되고 있다.

또 성능후 지급비율이 20%를 웃돌거나 180일이 초과되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허가를 극히 제한 하고 있어 업계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오는 10월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성능확인후 지급기간을 360일로 연장할 방침을 세운 것은 外産기계를 이용한 설비투자 기업들이 성능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며 투자기업의 자금부담이 분산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재무부는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절차간소화차원에서 이미 외국에 투자진출한 업체가 영업이익을 국내로 果實送金해오지 않고 增資등 형태로 재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오는 10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해외공관확인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 진출업체의 재투자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수익금으로 증액투자를 실시하려는 업체는 증액투자를 실행한 후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면되는데 해외투자절차상 사후보고

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당국은 또 해외투자시 주식취득등 해외투자실행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할 경우 현지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서류확인을 받는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 輸入決濟방법별 인증 및 허가제

항 목	외 국 환 은 행 認 證	한국은행許可
연지급수입(신용장·추심결제)	1)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 부담율이 10% 이하인 품목(일본등 항해일수 10일이하인 지역 : 5%) 2) 기간 -기본일수 : 60일 -수출용원자재는 120일 -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30일	-외국환은행인증 요건초과시 LG발급후 20일이내에 선적서류 미영수(무역금융예정분은 35일, LG보증금예치시 허가불요)
성능확인결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신용장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20% 이내를 물품인도후 180일 이내에 지급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거나, 물품인도후 180일을 초과지급
사전송금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수출국의 중앙정부기관, 중앙은행 또는 우량금융기관의 환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
사후송금	상공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수입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	30일 초과 지급
팩토링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본지사간 거래는 제외하고, 현지급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는 5만불 이내의 거래에 한함)	-결제기간 60일초과 -본지사거래 -5만불이상의 연지급대상품목 아닌 팩토링거래
분할지급수입(결제수단무관)	〈분할지급수입 대상품목〉 1)외화획득용 시설재(3년) 2) 연불수출용 원자재(360일) 3) 해외외화획득용 원자재(360일) 4) 방산물자(360일) 5) 중공업용 기자재(180일) *선적서류나 물품영수전 착수금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착수금을 제외한 수입대금은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함	-외국환은행업중 요건초과 LG발급후 30일이내에 선적서류 비영수(LG보증금예치시 허가불요)
중계무역	-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지급
혼합결제	-위결제방법이 혼합된 경우	

품질기술 分任組 활기
-工振廳 97년 종업원 30人이상까지 확대방침-

그동안 침체됐던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이 품질기술분임조로 재조직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공진청에 따르면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은 지난 80년대후반 이후 잦은 노사분규와 근로의욕 저하 등으로 중단위기에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의 재활성화를 꾀한 결과 금년 상반기중 새로 조직된 분임조만 8300여개에 달하는등 분임조 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종래에는 현장생산직 사원이 중심이 돼 추진됐던 품질관리분임조가 경영층과 관리직·현장생산직사원 모두가 참여하는 품질기술분임조로 전환, 종업원 50인이상 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조직된 이후 활동성과와 내용등 질적인 면에서 큰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말현재 등록된 전국의 품질기술분임조는 총 9만3243개로 86만여명이 분임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분임조수가 10만개, 분임조원은 100만명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진청은 품질기술분임조가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은 물론 명랑한 시장분위기 조성과 건전 근로 풍토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오는 94년까지 종업원 50인이상 전제조업체 1만200여사가 모두 분임조를 조직토록하는 한편 97년까지는 종업원 30인이상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풍토에 맞는 분임조 활동 모델을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가는 동시에 모범분임조원을 품질명장으로 선발, 우대하고 우수분임조에 대한 포상을 확대, 분임조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분임조는 한때 9만8천여개 분임조원 124만명에 달했으나 91년말에는 분임조가 8만2천개, 분임조원은 88만여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실제 활동을 하는 분임조는 절반정도에 불과해 와해직전에 있었다.

한편 지난해 품질기술분임조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춘계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는 지난 7월 14일 한국수출산업공단경진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 우리 중전업계에서는 동미전기공업(주)가 우수분임조로 선정되었다.

▲동미전기공업 공작분임조－변압기의 오일냉각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착된 방열기의 로링가공기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동률을 향상, 연간 1300만원의 비용을 절감.

수출검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업진흥청은 수출검사법 개정법률(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업진흥청 공고 제1993-889호('93. 7. 21)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개정취지

경제의 민간자율화 촉진과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전의무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므로서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ㅇ수출검사법을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함.
- ㅇ자율검사기준을 제정 보급하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검사소에 자율 신청검사를 받게하여 자율검사를 촉진토록 함.
- ㅇ수출품에 대한 품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지도 및 품질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지원
- ㅇ한국상품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 기준을 제정 보급하고 수준급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신청에 의하여 일류화 상품표시를 할 수 있게 함.
- ㅇ사전의무검사는 국제협약 또는 인체 안전·위해에 관련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3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장(문의처 : 검사행정과(503-7934))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2) 성명(단체의견은 단체명과 대표자)

기술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처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공고 제1993-39호('93. 7. 22)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주요내용 및 취지

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등 기술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자가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토록 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포함시켜 기술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할 것)를 과학기술처장관(참조 기술개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것은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503-76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상표 우리기술 밝아지는 우리경제